

서울고등법원

제22민사부

판 결

사        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나18531 구상금 등  
원고, 항소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○○(○○○○○○○-○○○○○○○○○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○ ○○○○아파트 ○○○동 ○○○○호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  
피고, 피항소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채○○(○○○○○○○-○○○○○○○○○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천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○○아파트 ○동 ○○○호  
제1심 판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23. 선고 2009가합84146 판결  
변론종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. 9. 9.  
판결선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. 11. 4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송○○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,558,461원 및 이에

대한 2009. 4. 2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 
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"대출받  
고," 다음에 "그 담보로"를 추가하고,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  
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 
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# [고쳐 적는 부분]

##### 『2) 판단

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  
우에는,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  
없이,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  
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, 그 연대보  
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  
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  
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  
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,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 
2008. 4. 24. 선고 2007다75648 판결).

살피건대, 을 제1, 2, 4, 6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와 제1심 증

인 송○○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, ① 송○○은 위 ○○카운티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는 2008. 1.경 강릉으로 가서 원고에게 위 아파트 현장을 보여준 사실, ② 송○○은 당시 원고에게, 위 미분양 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분양수익금의 10%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, 원고는 이를 승낙한 사실, ③ 원고와 송○○은 위 매수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HK저축은행 ○○동지점을 방문하였는데,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없어 원고 명의로는 위 은행의 '사업자금 대출'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, ④ 이에 송○○은 피고에게,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피고에게도 그 대가로 수익금의 10%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,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게 해 준 사실, ⑤ 송○○은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08. 2. 22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하고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, ⑥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송○○이 위 아파트의 계약금, 신탁 비용, 사무실 집기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, ⑦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송○○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송○○이 이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자,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각 수회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송○○은 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, 수익금의 각 10%를 지급하겠다고면서 피고에게는 사업자등록 명의로와 함께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, 원고에게는 연대보증 및 부동산 담보 제공을 해 줄 것을 각 부탁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

금을 받은 다음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이고,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면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송○○이라고 믿고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것이므로,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, 송○○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,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,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있고,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.』

## 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조인호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문유석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조우연 \_\_\_\_\_